

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(장 장) 제1항중 "지방농업연구원(4급)"을 "지방농업기정 또는 지방
농업연구원 (4급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연 행	개 정
<p>제 4조 (장 장) ① 농산물원종장애, 장장을 두며 <u>지방농업연구관 (4급)</u>으로 보한다.</p>	<p>제 4조 (장 장) ①을 두며 <u>지방농업기정 또는 지방농업연구관(4급)으로 보한다</u>.</p>